

2019년도 제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시 : 2019. 3. 19.(화요일), 11:00
- 장 소 :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
-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
 - 심의위원 : 박성호, 임진모, 전용준(분과위원장)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1.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

2. 전차(제2019-16회)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

3. 안건상정 분과위원장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보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정현순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4. 폐회선언 분과위원장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1. 의결안건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27건(안전번호 제2019-2311~2737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되, 우리말로 무단 번역한 일본 만화 게시물 중 심의시점에 이미 삭제된 게시물 1개 안전(제2019-2312호)는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기로 의결함

Ⅲ. 회의 의사록

1. 개회선언

- 전용준 분과위원장 :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

2. 전차(제2019-16회)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

- 전용준 분과위원장 :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
- A 위원 : 시정권고의 종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존재하여, 전차 회의록 6페이지의 '시정권고 하는 것이'라는 표현을 '경고'의 문구를 추가하여 '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'라고 변경하는 것을 요청하며,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찬성함
- B 위원 : 문구 수정에 찬성하며, 그 이외의 이견은 없고,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찬성함
- 전용준 분과위원장 :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함

3. 안전상정

-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정현순 전문위원 :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-2311~2737호로 모두 427건임
안전번호 제2019-2311호는 포털 카페 내 일본 드라마로의 링크 설정 게시물에 대한 사안이고, 안전번호 제2019-2312~2317호는 커뮤니티 사이트 내 우리말로 무단 번역한 일본만화 게시물에 대한 사안이며, 마지막으로 안전번호 제2019-2318~2737호는 웹하드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단순 불법복제물에 대한 사안임
 - 전용준 분과위원장 :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-2311~273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
 - 정현순 전문위원 : (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민원인의 신고내용 및 보호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여주면서)우선 안전번호 제2019-2311호는 일반인이 신고하여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, 포털 카페 내에 일본 드라마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임
해당 저작물의 DVD세트는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하여 유료로 판매되고 있음
 - A 위원 : 심의대상 게시물은 우리나라로 치면 역사 대하 드라마에 상응하는 저작물로, 인기 있는 작품임
 - C 위원 : 해당 저작물의 유료 DVD 세트 판매경로에 대해 질의함

- 정현순 전문위원 : 현재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음
- C 위원 : 국내에서 정식 판매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DVD세트는 우리말 자막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
- 정현순 전문위원 :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자는 smi 자막파일도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저작물을 유료로 구입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
- 정현순 전문위원 : 안전번호 제2019-2312~2317호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일반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기초로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, (커뮤니티 사이트 내 게시물을 보여주면서) 해당 안전 모두 제목에 번역이라고 적혀 있어 게시자들이 직접 번역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여 2차적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안전번호 제2019-2312호는 게시물이 심의일 현재 삭제되어 있음
- B 위원 :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게시한 것인지 질의
- 정현순 전문위원 : 대가를 바라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게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
- C 위원 : 마니아층이 취미생활로 번역하고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
- 정현순 전문위원 : (불법복제물 제공화면, 파일 다운로드 화면,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) 안전번호 제2019-2318~2737호 게시물은

모두 원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웹하드 사이트 등을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

음악저작물의 경우 묶음 파일로 제공되고 있어 다수의 곡들이 한꺼번에 전송되고 있음

- C 위원 : 게임의 경우 온라인 게임의 영향으로 최신 저작물은 없는 것으로 보임

- 정현순 전문위원 : 영화의 경우 안전번호 제2019-2441호 '마녀', 제2019-2523호 '스파이더맨: 뉴 유니버스'와 같이 최신 작품이 제공되고 있음

- 전용준 분과위원장 : 먼저 안전번호 제2019-2311호 링크설정 게시물에 대해 의견을 구함

- A 위원 : 기존 선례에 따라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- B 위원 : 동의함

- 전용준 분과위원장 : 안전번호 제2019-2311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함

- 전용준 분과위원장 : 안전번호 제2019-2312~2317호 일본 만화를 무단번역하여 게시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구함

- C 위원 : 심의시점 현재 게시되어 있는 안전번호 제2019-2313~2317호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
- B 위원 : 안전번호 제2019-2312호는 심의시점 현재 삭제된 게시물임
- C 위원 : 심의시점 현재 이미 삭제된 게시물과 관련하여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, 안전번호 제2019-2312호와 같이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가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게시물을 한 번 올렸다가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층위를 나눠서 경고의 시정조치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
- B 위원 : 심의시점 현재 삭제된 게시물이더라도 한 번 업로드 된 불법복제물은 재업로드가 될 가능성이 높음
- A 위원 :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여 다시는 업로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라 삭제와 업로드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권고하여 해당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법 제도 취지에 맞다고 생각함
- B 위원 : 이와 관련하여 전체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전이 있는지 질의함

- 정현순 전문위원 : 2019년 3월 7일 개최된 제1분과위원회(제2019-13회)에서 전체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음
- B 위원 : 전체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임
- A 위원 : 불법복제물이 업로드되어 한번이라도 전송이 되었으면 이후 삭제하였더라도 저작권법 제133조의3(시정권고 등) 제1항 제1~3호 중 제1호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
- C 위원 : 그렇게 요건을 구체화 하는 것에 동의하나 경고의 문안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OSP(온라인서비스제공자)에서 직접 게시자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해당 OSP에서 강한 문구로 경고 시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염려됨
- 정현순 전문위원 : 경고의 시정권고 예시문안은 차기 심의 때 보고하겠음
- 전용준 분과위원장 : 안전번호 제2019-2312~2317호는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정이용이나 인용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정조치를 권고함 다만 심의시점 현재 이미 삭제된 게시물인 안전번호 제2019-2312호는 경고의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
- C 위원 : 나머지 안전들은 모두 웹하드를 통하여 유통되는 데드카피된 불법복제물이 명확하여 가결함이 타당함

- A 위원 : 같은 의견임

- B 위원 : 동의함

- 전용준 분과위원장 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-2318~2737호 게시물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를 의결하기로 함

(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)

“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-2312호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, 나머지 안전번호 제2019-2311호 및 제2019-2313호~2737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”

4. 폐회 선언

○ 전용준 분과위원장이 제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

2019년 제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3. 26.

분과위원장 전용준

위원 박성호

위원 임진모